



## 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일

### 영 광 군 수

#### 1. 조 례 명 :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조례

#### 2. 제정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내용 반영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
- 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영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려 함

#### 3. 주요 제정내용

- 제1장 총칙(안 제1조 ~ 제2조)
- 제2장 기금조성 및 운영(안 제3조 ~ 제10조)
- 제3장 위원회 운영(안 제11조 ~ 제16조)
  -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·위촉

###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2. 5. 19. ~ 6. 8. (20일간)

## 6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스포츠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22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 
전화) 061-350-5252/ FAX) 061-350-5360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## 7. 기 타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담당자(전화 : 061-350-525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의견제출서

1. 조례안	「영광군 체육기금 조성·운용 조례」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

(전화 : 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영광군수 귀하

#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제정(안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의하여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체육진흥기금”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.
2. “체육진흥적립금”(이하 “적립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.
3. “체육진흥운용금”(이하 “운용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.

## 제2장 기금조성 및 운용

제3조(기금의 구분)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 출연금
2. 기타 수입금

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
2.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
3. 기타 수입금

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, 출연금은 매년 3억원 이상으로 한다.

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.

제5조 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)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,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.

제7조(기금관리 운용)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,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익금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학교체육 육성지원
2.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
3. 체육대회 출전지원
4. 생활체육 육성지도
5.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제7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,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「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### 제3장 위원회 운영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,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의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팀장이 된다.

제16조(실비보상)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칙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.

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4조(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·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.